

---

# 2021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

2021. 1. 4



## 2021년,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1. 50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1. 1. 1부터 근로시간단축(52시간)이 적용되며, '21. 7. 1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도 적용
2. 30인이상 민간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
3.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을 적용
4. 건설업 노무비율은 전년도와 동일, 월평균 보수액은 4,330,442원이 적용
5. 실업급여 고용보험요율 1.6%, 산재보험요율 3.7% 적용
6. 건설업 국민연금요율은 전년도와 동일, 건강보험요율 일부 인상되어 6.86% 적용
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가 '20. 11. 27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21. 5. 26까지 한시적 계도기간 운영
8. 건설기능인 기능인등급제 도입 (시행 '21. 5. 27)

※ 자세한 내용은 세부자료 참조

## 1.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1. 1. 1부터 근로시간단축(52시간)이 적용되며, '21. 7.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됩니다.

- 정부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21. 1. 1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시간단축(52시간)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라 '21. 7. 1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확대
  - 300인 이상('18. 7. 1부터) → 50인 이상('20. 1. 1부터) → 5인 이상('21. 7. 1부터)

## 2. 3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시행 '21. 1. 1]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부칙제1조제4항에 따라 '21. 1. 1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 적용
  - 300인 이상('20. 1. 1부터) → **30인 이상('21. 1. 1부터)** → 5인 이상('22. 1. 1부터)

## 3.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을 적용합니다. [시행 '21. 1. 1]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1. 1. 1 ~ 12. 31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당 1.5%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 고용부 고시 제2020-110호)
  - (2020년) 8,590원 → (2021년) 8,720원(월 환산액 1,822,480원)

**4. 건설업 노무비율은 전년과 동일(원도급 : 27%, 하도급 : 30%)하고, 월평균 보수액은 4,330,442원이 적용됩니다. (시행 '21. 1. 1)**

-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결정에 활용되는 '21년도 건설업 노무비율 고시 (※ 고용부 고시 제2020-164호)
  - (일반건설공사) 총 공사금액의 27%, (하도급공사) 하도급 공사금액의 30%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활용되는 '21년도 건설업 월평균 보수액 고시 (※ 고용부 고시 제2020-166호)
  - (2020년) 4,226,652원 → (2021년) 4,330,442원(2.46% 상승)

**5. 실업급여 고용보험요율은 1.6%, 산재보험요율은 일부 인하되어 3.7%를 적용합니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21년에는 동결된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 적용
  - (2020) 1.6% → (2021) 1.6% (사업주 0.8%, 근로자 0.8%)
-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1년에는 출퇴근 재해 0.03% 인화된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적용 (※ 고용부 고시 제2020-145호)
  - (2020년) 3.73% → (2021년) 3.7%(출·퇴근 재해 0.10% 포함), (사업주 부담)

**6. 건설업 국민연금요율은 전년과 같이 9% 적용하고 건강보험 요율은 일부 인상되어 6.86%를 적용합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21년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전년과 동일
  - 9% 적용(사업주 4.5%, 근로자 4.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21년에는 2.85% 상승한 건강보험료율 적용 (※ 건강보험공단)
  - (2020년) 6.67% → (2021년) 6.89% (사업주 3.43%, 근로자 3.4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1년에는 12.39% 상승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적용 (※ 건강보험공단)
  - (2020) 10.25% → (2021) 11.52% (사업주·근로자 각각 분담)

**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가 '20. 11. 27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21. 5. 26까지 한시적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20. 11. 27부터 공공 100억원 이상, 민간 300억원 이상부터 전자카드제 단계적 시행
  - '20.11.26 : (공공) 100억, (민간) 300억 이상
  - '22. 7. 1 : (공공) 50억, (민간) 100억 이상
  - '24. 1. 1 :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 ※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자카드 발급, 단말기 설치 준비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 운영중('20. 11. 27 ~ '21. 5. 26)

**8.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 지원을 위해 기능인등급제가 도입됩니다. [시행 '21. 5. 27]**

-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21. 5. 27부터 건설근로자의 자격·경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함
- ※ 구체적 사항 등은 세부내용이 정해지는데로 별도 안내